

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 신청서

※신청서 제출 기한 1일 16시 이전, 보고서 제출 기한 7일 이내

담임	학년부장	교감
		전결

성명			학년 반 번	휴대폰		
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 20일	신청 기간	1일 기준	20 년 월 일 ~ 월 일			총 ()일간
		반일 기준 (4시간 미만)	날짜	20 년 월 일		
			시간	시 분 ~ 시 분		
	우리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불허기간 확인 ※필요시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 (국외체험시 증빙서류(항공권사본 등) 제출					
학습형태	◦가족동반여행() ◦친·인척 방문() ◦답사·견학 활동() ◦체험활동()					
목적지				(숙박시) 숙박장소		
보호자명			관계	휴대폰		
인솔자명			관계	휴대폰		
목 적						
교외체험 학습계획						
학생안전	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(담당)교사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.					☐ 동의함
위와 같이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을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보호자: (인) 학생: (인) 수지초등학교장 귀하						

----- (이하 담임 작성) -----
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

성명			학년 반	제 학년 반 번		
본교 출석 인정 기간 연간 20일	신청 기간	1일 기준	20 년 월 일 ~ 월 일 ()일간			
		반일 기준 (4시간 미만)	20 년 월 일			
			시 분 ~ 시 분 (시간)			
금회까지 누적 사용 기간 ()일	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 20 . . . 수지초등학교 ()학년 ()반 담임교사: (인)					

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
여부 통보서(또는 문자)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.

※ 신청서 제출 기한은 1일 이전,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. 해외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
(담당)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(담당)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.

※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(담당)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건강과 안전을
확인시켜야 합니다. 미이행의 경우 시·군·구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국외로 체험학습을 갈 경우, 신청서나 보고서 제출 시에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(비행기표, 선박티켓)
사본을 꼭 제출합니다.

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 결과보고서

담임	학년부장	교감
		전결

[illegible]

※ 보고서 제출 기한: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

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 결과보고서(별지)

[illegible]

